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,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,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
(안 제30조제2항 일부개정)
-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5~10%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0~10% 비율로 하한을 축소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8. 16. ~ 9. 25.)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“95퍼센트”를 “100퍼센트”로, “5퍼센트”를 “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) ① (생 략)	제30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,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,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<u>95퍼센트</u> 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,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<u>5퍼센트</u> 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 <u>0퍼센트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06